

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남궁역 의원 외 21인

나. 의안번호: 제2149호

다. 발의일자: 2024.10.15.

라. 회부일자: 2024.10.18.

2. 제 안 사 유

- 기후예산제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없이, 기후예산서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.
- 또한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,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기후결산서 관련 내용 규정(안 제5조제3항).

나. 기후예산서·결산서 작성 규정 신설(안 제5조제5항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

「국가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후예산제는 예산 및 사업 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, 집행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, 결산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임.
- 2023년 12월에 제정되어,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조례에는 기후결산서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고, 기후예산서를 작성할 때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동하지 않은 채 개별 사업의 감축량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과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된 기후결산서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,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시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연계를 통해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

<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 항	내 용
안 제5조 제2항	· 기후결산서 포함 사항에 관한 자구 수정
안 제5조 제3항	· 기후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- 집행 실적,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
안 제5조 제5항	· 기후예산서·결산서 작성 방법 규정 - 온실가스 감축량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연계 -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의 명확한 파악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5조제2항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기후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하려는 것으로, 개정 취지에 공감함.

다만,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‘감축목표’는 기후예산의 감축목표가 아닌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의미하는 것인바, ‘온실가스 감축목표’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- 안 제5조제3항은 기후결산서에 집행 실적,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고, 안 제5조제5항은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후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명시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견 없음.
- 다만, 2025년도 기후예산서는 2024년 6월에 확정된 작성 지침을 근거로 이미 작성된바, 2026년부터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후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<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의견>

개정안	수정 의견
제5조(기후예산서 작성 등) ① (생략)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2. (생략) <u>3.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감축목표</u> 4.5. (생략)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	제5조(기후예산서 작성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2. (개정안과 같음) <u>3.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</u> 4.5. (생략)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